



강원지방우정청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6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전보기준 개선 시행

1. 관련

- 가. 강원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(연고지전보)
- 나. 6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전보 운영 개선(2011년)
- 다. 6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전보 운영 계획(2015년)

2. 6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전보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운영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선 내용

- 1) 중심도시 기준 권역별 거리 병산에 따른 점수만 반영하고 경영평가 성적 반영 폐지
- 2) 가·감점 사항 중 다자녀 공무원 가점만 반영하고 징계처분 및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

나. 연고지전보 운영

- 1) 원거리 비 연고지 근무자 우대를 위한 권역별 근무포인트제 및 근무기간 계산 방법은 현 제도 유지
- 2) 비 연고지 근무 가점 및 제외기간
 - 가점 : 다자녀(미성년자 3명이상) 공무원은 비 연고지 근무 1년 초과부터 매월 0.2점 추가
 - 제외기간
 - 징계처분 제한기간 : 견책(6월), 감봉(12월+처분기간), 정직(18월+처분기간) 강등(24월),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처분자(6월)
 - 휴직기간(단,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 기간,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1년만 근무기간에 포함)
- 3) 연고지전보 예외 적용
 - 직제와 정원의 조정 및 과원자의 재배치에 따른 비 연고지 근무자는 우선 전보할 수 있음
 - 비 연고지 근무자가 정원의 조정 및 과원자 재배치에 따라 또 다시 비 연고지로 배치된 경우 전 근무 연고지 포인트를 승계
 -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및 총괄 국장의 전보 제외 요청 자는 연고지 전보를 보류

4)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순위

- 1순위 : 다자녀(미성년자 3명 이상) 공무원
- 2순위 : 부모봉양 공무원 [주민등록등본 및 부모 무직증명(건강보험증)]
- 3순위 : 가족거주(주민등록등본)
- 4순위 : 원거리 근무자(연고지 희망관서 기준)
- 5순위 : 연장자

5) 행정사항 : 상기 개선 내용 이전에 적용된 사항은 종전 계획을 따름

다. 시행일자 : 2016. 3. 10.자 끝.

강원지방우정청장



수신자 자청 각 과실, 총(1-19), 우정노조강원지방본부위원장, 공무원노조강원지역본부장

주무관

최병철

인력계획과장

함기철

사업자원국장

홍순희

청장

03/09

김태의

협조자

시행 인력계획과-1277

(2016.03.09.) 접수

()

☎ 2648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(단구동, 강원지방우정청) / <http://gangwon.koreapost.go.kr>

전화 [033\) 749-2042](tel:0337492042) / 전송 033)730-9605 / 071017235@koreapost.go.kr / 공개